

1. 개정이유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벌칙만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별표8)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제2호 머목의 “내용을”을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가.~러. (생 략) 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u>내용을</u>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버.~투. (생 략)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러. (현행과 같음) 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u>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 보를</u>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버.~투. (현행과 같음)